

# 소음관련 분쟁 해결기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가. 환경분쟁조정기관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환경부내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1급공무원)에서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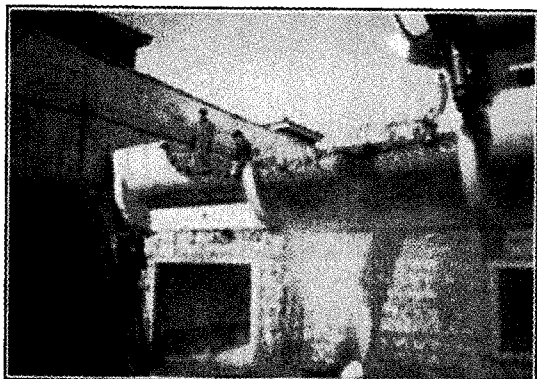
- 재정사건(민원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알선, 조정사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알선, 조정, 분쟁사건, 2개 시·도 이상에 관련된 알선, 조정사건, 예상 환경피해 분쟁 알선, 조정사건 등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각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조정기구로서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한 환경피해 분쟁사건의 알선, 조정업무를 관장한다. 단 재정업무는 할 수 없다.

## 나. 환경분쟁조정신청대상

- 1)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한 피해
- 2)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에 의한



피해

3)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하천오염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 환경피해분쟁 조정제도로서 사업계획의 변경, 피해 예방조치의 청구 등의 알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급전적 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 다. 환경분쟁의 종류

1) 알선

환경오염 피해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와주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상호 견해를 중개(仲介)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다. 알선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 위에 조정 또는 중앙위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청구(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재판)도 가능하다.

2) 조정(Arbitration, Mediation)

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지방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에 관한 조정사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조정의 절차



## 사슴과 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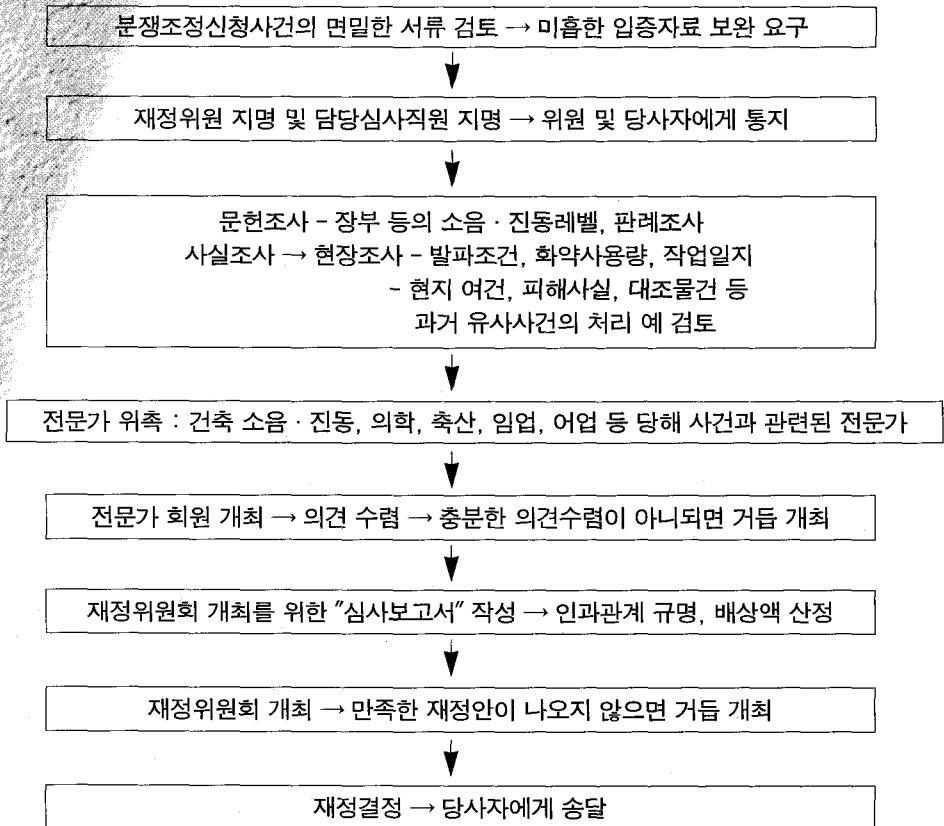
는 비공개 원칙이다.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정신청 또는 재판청구가 가능하며 거부의사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거부 통고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간 채무, 채권관계가 성립된다. 조정안에 수락하고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재판도 가능하다.

### 3) 재정 (Decision)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간의 분쟁에 대하여 제 3자인 재정위원회가 법절차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된 기능이고 당사자 심문은 공개이며, 재정위원회는 비공개이다. 재정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민사재판청구가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재판청구가 없으면 승복으로 간주하며 승복하고도 배상치 않을 경우 피해자는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소음 및 진동피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음 및 진동피해분쟁 조정 절차

**라.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 및 유의 사항**

1)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된다.

· 알선, 조정 : 피해자, 가해자 양측 신청

가능

- 재정 : 피해자만 신청가능
- 2) 현장 사진촬영, 피해 실체의 증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3) 환경피해 청구액별 수수료(아래표)

단위 : (원)

구 분	5백만원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
알 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 정	10,000	77,500	127,000	527,000
재 정	20,000	155,000	255,000	1,055,000

**마.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장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심사관, 관계전문가를 통한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 신

속,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행정제도이다. **민국양륙**

# 마취기구 공급안내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에서 마취기구를 공급중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 취급 품목 ◇

• 마취기구 세트 • 주사기 • 바늘

신청전화 : 02)969-6600